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99
------	-----

2007. 9. 5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1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7. 9. 5.)
-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교통국장 장정우)

가. 제안이유

-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정책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부과규정 을 삭제함. (안 제3조제3항 삭제)
-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개정함
 -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 방법 개선 : 장애인수첩 ⇒ 장애인등록증 (안 별표1 비고제 7호)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 방법 변경 : 스티커 부착 ⇒ 전자태그 부착 (안 별표 1 비고제15호)
- 3)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 중 업무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외국공관을 추가함. (안 별표2 제2호, 별표3 제2호)
-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근거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안 별표2 비고제5호, 안 별표3 비고제 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종식)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7. 8. 17.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9호로 2007. 8. 2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었던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정책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첫째, 시민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가산금 부과 관련규정 정비

-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특성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3항에서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의 4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율과 징수방법에 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가산금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제3조제3항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의 위임없이 노외주차장에서 가산금(주차요금) 부과를 규정한 문제가 있어왔음(별첨1 참조).

※ 참고 : 동 조례중 제3조제3항 삭제

현행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3항

③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금지수준이 1금지·2금지 또는 3금지인 경우에는 해당 금지의 주차요금을, 4금지 또는 5금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본항신설 2005.01.05) => 동 조항 삭제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위법조항인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법치행정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집행부의 경우 조례안 상정시 방침수립부터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별첨2 참조), 심각한 하자를 가진 조례안을 제출하고 운용하여 왔는데, 비록 그동안 노외주차장에 부과된 가산금이 크지는 않다 할 것이나(별첨3 참조) 2년 7개월이 넘도록 위법한 조례를 운용한 것은 시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조례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임.

둘째, 주차장법 시행령의 변경사항 반영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외국공관에 대해서도 동규정의 적용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적용예외규정 추가

현행 조례 [별표2]와 [별표3] 중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셋째, 정책변경사항 반영

-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대상을 규정한 동 조례 [별표1] 비고 7호의 가목중 일부용어와 비고15호 가목중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참고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대상 규정

<p>현행 조례 [별표1]비고7호 가목 중 “장애인수첩 소지자”=>“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p> <p>현행 조례 [별표1]비고15호 가목 중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p>
--

- 먼저 시가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하고자 한 것은, 장애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장애인 등록증의 부정이용을 억제하고 실질적 장애인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 조례상에 최근 새로 도입된 “전자태그”개념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에 대한 할인을 명확히 한 것 또한 조례규정의 시의성 및 명료성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

넷째,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현행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 비고5와 비고6을 틀 조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누락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별첨4 참조).
- 늦게라도 현행 조례에 누락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령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상위법령의 일부조항을 누락하여 그동안 동 조례가 아닌 주차장법 시행령을 기초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현행조례의 해당조문을 실질적으로 사문화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조례운용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 요망됨.

끝으로

- 중앙정부는 상위법령 개정시 입법예고를 통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있고, 서울시 법무담당관도 2주 단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관 실국에서는 개정조례안 상정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할 것임.
-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수첩”이 “장애인등록증”으로 그 표현이 바뀐 것이 2000년 1월임을 감안할 때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은 지나치게 뒤늦은 감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집행부가 소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례개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근무기간동안 필요한 부분만 뺄질식으로 개정해온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교통국 소관 조례 전반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 상황을 확인하고 상위법령에 부응하도록 현행 조례들을 개정하여 조례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별히 금번에 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경우, 목적조항을 규정한 제1조에 이어, 제1조의 2에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 3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규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치법규체계의 통일을 위해 마련해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실무」 기준에도 어긋나 있는바, 차제에 기준에 제시된 대로 목적, 정의, 해석, 적용범위 순으로 현행 조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